



광 주 교 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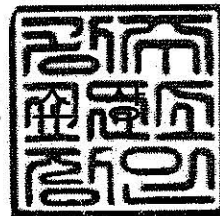


수신자 김 [redacted] 귀하
(경유)

제목 징벌집행 통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용자 인적사항	수용자 번호 [redacted] 죄명 [redacted]
	형명·형기 [redacted]
징벌의 내용	금치 9일에 처한다. 조사기간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고, 운동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외운동 실시.
불복방법	귀하는 징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117조에 따른 소장면담·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첨 징벌의결서 부분 1부. 끝.	

광 주 교 도



주무관	이민영	교감(교정직렬)	나병천	책임관	조순구	과장	정봉수
부소장	박병일	소장	김상두				

협조자

시행 보안과-1012 (2014. 01. 29.) 접수

우 500-70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 <http://www.moj.go.kr>

전화 062-251-4321 전송 062-264-6609 / cozy4047@moj.go.kr / 부분공개(6)

징벌의결서

수용자 인적사항	성명	김 []	수용자 번호	[]	죄 명	[]
			형명·형기	[]		

주 문 **금치 9일에 처한다.**

지시불이행 등

이 유

1. 의결이유: 2014.01.17. 09:4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팀장이 이 사람에게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히 하여야 하니 자르세요”라고 하자 “저는 트랜스젠더이니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소송할 거예요”라며 완강히 거부하여 팀장이 이 사람에게 수회 권유와 지시를 함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10:15경 기동순찰팀이 실시한 거실검사에서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보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를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위 물품 허가되지 않은 물병보온덮개는 같은 수용동에서 생활하다가 출소한 []번 []에게 전달받아 사용 소지하였으며, 모포 3개는 거실에 입실할 당시부터 있던 것이며, 부채 1개는 안양교도소 수용당시 사용해오던 것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임.




2. 주장사실과 판단: 조사과정에서 본인 자술서, 진술조서, 증거사진, 근무자 근무보고서에 의해 지시불이행 등 사실이 인정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15호,17호에 위배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4호에 의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여부 및 그 기간: 조사기간을 금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 거 법 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2014년 01월 29일

광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	박 병 일	
위원	조 병 주	
위원	노 이 정	
위원	김 연 택	